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9. 1 선고 2021가단836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1.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7. 1. 31. 접수 제11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7. 소외 C에게 대출만기일을 2012. 2. 17. 지연이자율을 최고 연 19%로 정하여 7,500만원을 대출해주었는데, 이후 위 대출만기를 2017. 2. 17.로 연기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21. 5. 13. 기준으로 합계 71,872,599원이다.

다. C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기 직전인 2017. 1. 19.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7. 1. 31. 접수 제11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C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는 C에게 500만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7. 1. 24. C에게 5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의 배우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정도로 C가 무자력 상태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② 무자력 상태의 C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을 담보조로 증여받는다면 이는 곧 C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 C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명중

별지

목 록

강원도 정선군 전 1987㎡.



